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· 의결

의	안 번	<u>ই</u>	제2022-014-111호 (사건번호 :)
안	건	명	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	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피	심	인	(사업자등록번호 :)

대표자

의 결 연 월 일 2022. 9. 14.

주 문

1.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6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

- 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.
 - 가.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나.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이 유

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'보호법'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고,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"공공기관"으로 지방행정, 지방세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사업자 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Ⅱ. 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조사()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하였다.

1.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행위

- 1)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 - ※ 홈페에지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 있지 않았음

- 2) 피심인은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할 경우 가상사설망(VPN 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음
 - ※ 홈페이지 시스템에서는 아이디·비밀번호 외에 안전한 접속 수단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이 구현 되어 있지 않음
- 3) 피심인은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가. 관련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(제2호)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」에서 개인정보처 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제5조제6항)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(VPN 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 (제6조제2항)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. (제6조 제5항)

나. 위법성 판단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
 -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(고시 제5조6항)
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(VPN 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
 - 피심인은 외부에서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가상사설망(VPN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음(고시 제6조제2항)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하나
 -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,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(고시 제6조제5항)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의 부과

-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① (기준금액 산정)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>

		과태료 금액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 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L! MI/5/5	600	1,200	2,400

(단위: 만원)

② (과태료의 가중)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2021. 1. 27, 개인정보위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 제8조 [별표2] 가중기준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 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%인 60만원을 가중한다.

< 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조 관련) >

기준	가중사유	가중비율
	1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에 해당하	기준금액의
위반의	는 경우	50% 이내
정도	2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	기준금액의
	는 경우	30% 이내

- ③ (과태료의 감정)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[별표1] 감경기준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 완료하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 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의 50%인 300만원을 감경한다.
 - ※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< 과태료의 감경기준(제7조 관련) >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		
위반	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거나, 사소한 부			
정도	주의 또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	50%이내		
조사	1.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	기준금액의		
협조	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50%이내		
	2.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	기준금액의		
자진	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	40%이내		
시정	3.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	기준금액의		
믕	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	30%이내		

④ **(최종 과태료)** 기준금액 600만원에 가중 및 감경사유를 적용한 36**0만원을** 부과한다.

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(안) >

(1	단위	만원)	
	ᆣᄑ	그면!	

개인정보!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		
위반조항	처분 조항	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(A) (B) (C) D=(
제29조(안전조치의무)	제75조제2항제6호	600	60	300	360

[※]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 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2. 시정조치 권고

보호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.

- 가.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Ⅴ. 결론

피심인의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 제2 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제64조(시정조치 등)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,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2년 9월 14일

- 위원장 윤종인 (서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염흥열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